

**구의회 3층 회의실용 방송장비 오디오믹서 설치
과 업 지 시 서**

2016. 3.

서 대 문 구 의 회

과업지시서

1. 과업명 : 구의회 3층 회의실용 방송장비 오디오믹서 설치

2. 목적

- 서대문구회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층 1회의실 및 2회의실용으로 방송실에 오디오믹서를 설치하기 위해 전문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(2016. 3월중)

4. 과업범위 : 오디오믹서 장비 설치

5. 과업 일반 사항

- 계약상대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음향 영상시스템 유지 보수요원과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- 기존 방송장비와 상호호환 되어야 하며, 향후 확장성, 성능대비 비용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.
-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기 운영 중인 방송장비 시스템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.
- 유지보수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.

Ⅱ. 일반시방서

1. 용어의 해석

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. 사업의 변경

1)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-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
-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
-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

2)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 할 수 있다.

3. 계약의 해지

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-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
-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 되었을 때

4. 계약상대자의 책임

1) 안전관리의 의무

-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

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2) 법률준수의 의무

-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3) 보안 준수 및 비밀유지의 의무

가. 보안 및 비밀유지

-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,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사업 수행 중 생성 및 제공받은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, 사업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인원·사무실·장비·자료·내외부망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파견된 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-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“계약상대자”는 정보누출 적발 시 「지방계약법」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,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1.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·외부 IP주소 현황
2.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
3. 사용자계정·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
4.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물
5.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(유출시 안보·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의 경우)
6.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
7. 정보보호제품 및 통신스위치 장비설정 정보
8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
9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 1호의 개인정보
10.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

- “계약상대자”의 보안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있다.

나.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

-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‘정보노출’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
-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
-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
-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

다.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

-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, 인계자·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
-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대문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·관리
-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·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,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
- ※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
-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
-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·대여·열람을 금지

라. 사무실·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

-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·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
-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
-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·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

-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

마. 내·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

-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
-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,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

4) 시스템 성능에 대한 책임

- 시스템 구성 시에는 기존 환경과 연계 및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.

5) 성실의 의무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, 사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5. 용역수행자의 교체

- 1) 과업수행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,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감독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- 2) 과업수행 중인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,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
6. 설치 및 시험운영

- 1) 장비의 설치 시 감독원 입회하에 항목별, 단위업무별 등을 종합테스트 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시험운영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·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.

7. 절차의 준용

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8. 하자보수

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9. 기타 특기사항

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